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김현상 의원 대표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590 |
|----------|------|

발의일 : 2015. 9. .

발의자 : 김현상·김주은·강한옥·김명기·최정아·
양창원·김성근·서정택·김재열·김순희·황동혁

1. 제안이유

- 개정질문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취함으로써 질문자가 의도한 대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여 구민에게 구의 정책방향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개정질문의 형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추가하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동작구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발언시간 20분, 보충발언시간 10분과 답변시간 약10분 등을 고려하여 40분으로 함 (안 제65조의2)

※ 동작구회의규칙 제32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질의·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71조(회의규칙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별도합의 필요 없음

라. 기 타

(1) 개정안 : 별첨

(2) 입법예고(2015.9.4 ~ 9.10) :

(3) 규제사무 :

마. 서울시 자치구의회 일문일답식 운영 제한시간 현황

| 구 분 | 일문일답 운영 | 30분 | 40분 | 60분 |
|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
| 의회 수 | 13 | 4 | 7 | 2 |

단, 중랑구의회는 30분이나, 답변시간 제외임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5조의2(구정질문) ① 의원은 회기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(이하 “구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

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65조(구청장등의 출석요구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(생 략)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 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신 설 ></p> | <p>제65조(구청장등의 출석요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<삭 제></p> <p>제65조의2(구정질문) ① 의원은 회기중 본회의에서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(이하 “구정질문”이라 한다)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구정질문은 의원별로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|